

문서번호 대의협 제0641 - 00717호

시행일자 2023. 4. 2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의료기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안내 요청(중앙방역대책본부)

1. 귀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 중앙방역대책본부-2893(2023.4.20.)

3. 지난 2023.3.20.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시설 일부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여 시행중이나, 의료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게 **실내마스크 착용 의무***가 유지됩니다.

*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,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시설

4. 이에,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내 환자, 방문객, 의료인 등이 실내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할 수 있도록 불임과 같이 우리협회로 안내 요청해온 바,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1. 중앙방역대책본부 공문 1부.

2.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(제8판) 및 FAQ 각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과목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(각과개원의협의회장),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, 대한전공의협의회장, 대한공중보건사의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